#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71 발의연월일: 2025. 1. 13.

발 의 자:이병진・민병덕・이학영

이재관 • 윤후덕 • 이상식

소병훈 · 김현정 · 김문수

이원택 • 권향엽 • 안태준

주철현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에 대해 회보하는 경우 이미 실효된 형에 대하여서도 제한 없이 회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실효된 형의 경우 보안과 관련하여 문제될 내용이 없는 행위로 인한 것임에도 시간의 경과로 해명할 자료가 없게 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무조건적으로 포함하여 회보하게 되면 보안시설 취업과 관련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현행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실효된 형에 대해서는 회보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 법률 제 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회보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효된 형은 회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회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
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	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⑤ 제1항제5호에 따른 범죄경
	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회
	보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
	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효된 형은 회보하여서는 아
	<u>니 된다.</u>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